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76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나219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 담당변호사 박BA)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홍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 11. 선고 2001나219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심은 기초사실로서, 원고는 피고와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에 따른 신CA기금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등의 대출보증과 관련한 대출기업의 신용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온 사실, 원고는 1998. 12.경 주식회사 시D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자금 1억 원을 대출하기에 앞서,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용 심사기준표의 보증심사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바 소외 회사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탁기관의 자격에서 1998. 12. 30. 소외 회사를 피보증인으로 하고 보증금액을 금 8,000만 원(대출예정금액의 80%)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금 1억 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위 대출에 즈음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FA와 그의 처인 박EA 등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박EA은 그녀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박EA의 주택에는 이미 1997. 9. 8. 주식회사 거DB제철화학, 채무자 티GA에이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및 티GA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어 1998. 11. 13. 소외 회사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9. 8. 31. 이후 2월 이상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신용보증계약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대출 당시 원고가 박EA으로부터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 소외 회사가 최고 금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중첩적 계약인수를 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나아가 위 계약인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된 실제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외 회사와 종전 채무자들이 어떤 관계의 회사이며 종전 채무자들이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신용조사업무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므로 위 업무위탁계약 제8조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1) 원 · 피고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에는,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1항), 신CA기금법, 동시행령과 피고가 정하는 업무방법서, 제

규정, 자동신용보증취급요령 기타 피고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2항), 원고가 그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위탁계약위반면책기준’에 의해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보증심사요령’에는 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상황, 시장여건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제33조 1항), 신CA기금법, 동시행령, 업무방법서, 위탁보증심사요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심사기준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제34조), 이 때 보증심사기준표는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와 ‘중소기업협동조합용 심사기준표’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고, (3)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보증위탁계약위반면책기준’ 제12호는 ‘피고가 문서로 수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음에도 수탁기관이 동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한 때’에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 및 동 종속채무의 전부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기록에 의하면, 동 면책기준 제1 내지 11호도 각각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과 (4)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을 하면서 위 ‘위탁보증심사요령’ 소정의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함에 있어 신용조사에 관하여는 원고 은행의 내규에 따라 약식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심사에 관하여는 위 심사요령 제35조 1항 소정의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에 따른 보증심사를 하여,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업무위탁계약 제8조 3항은 원고가 위 업무위탁계약 제8조 1, 2항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보증위탁계약위반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위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가 위 면책기준 소정의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위 면책기준 제12호를 들고 있으나, 위 면책기준 제12호의 문언내용에 비추어 그 제12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일반 규정과는 따로 원고에게 ‘문서로써’ 부과한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업무위탁계약서’ 및 ‘위탁보증심사요령’ 외에 따로 문서로써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고(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1, 2항이 여기에서 말하는 ‘문서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달리 위 면책기준 제1 내지 1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음을 주장한 바 없을뿐더러,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 업무처리과정에 위 면책기준 제1 내지 11호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에게 위 면책기준 소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하며, 위 업무위탁계약서 제8조 1, 2항은 위 면책기준 제12호에서 말하는 '문서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문서로써 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제12호를 내세우는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본 판단에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 업무처리과정에 위 면책기준 소정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위탁계약 제8조 1항 소정의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 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1) 원고가 이 사건 신용조사업무를 함에 있어 신CA기금법, 동시행령과 피고가 정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2) 원고가 위에서 본 '운전자금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한 보증심사와 원고 은행 내규에 정한 바에 따른 약식신용조사서에 의한 약식신용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금융거래상황, 시장여건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는데, 그 조사항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소외 회사가 종전 채무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알았다 하여 나아가 위 종전 채무자들이 소외 회사의 관계회사인지 여부와 위 채무자들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서까지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3)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함에 있어 일반신용조사 아닌 원고 은행 내규에 따른 약식신용조사를 한 점에도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고의 신용조사 과정에 위에서 본 면책기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면책되는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가 그 면책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 면책사유 중 어느 하나에의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어느 점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